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안이유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 되도록 조정되어 조례를 제정 코저함

□ 주요골자

- '1994. 4. 1부터 연간 10만원미만(매분기32,500원)의 짚형자동차세를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한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정함

□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2항)

□ 첨부

-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준칙 1부
-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사본1부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부 끝.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 (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 이하	10 원	110 원
2,000씨씨 이하	10 원	140 원
3,000씨씨 이하	12 원	165 원
3,000씨씨 초과	15 원	200 원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